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68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이인영·윤건영·김용만

정준호 • 이수진 • 임광현

김성회 • 이정문 • 박상혁

김윤덕 • 박홍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박 운항업무, 항공기 조종업무 등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도 기간제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는 그 특성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압박 등 고용불안으로 인하여 안전 등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 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2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또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진작업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등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유해·위험 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 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업무
 -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 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

- 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업무
- 라.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유해 하거나 위험한 업무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운전업무
- 사.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공업무
- 아.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의2가 목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 나.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 3.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제21조 중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자
-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
	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
	결한 근로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 중 국
	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거
	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
	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뤄지
	<u>는 업무</u>
	나. 「항만운송사업법」 제3
	조제1호, 「한국철도공사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농수산물 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40조, 「물류정책기

 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

 법」 제33조에 따라 근로

 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37 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 대론 의료기사의 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수의 업무, 「응급의료에 무용급의료종사자 업무

라.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58

 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

 전업무

사. 「항공안전법」 제2조제5 호에 따른 항공업무

아.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운전 및 정비업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중 공중의 일 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u>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u> <u>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u> <u>급사업</u>

제21조(벌칙) <u>제16조의 규정을 위</u>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 우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 3.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21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u>----
 -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 제근로자를 사용한 자
 -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